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

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와 〈회사명〉_____(이하 "산업체"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
②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학과명	위탁생 수	성명	위탁교육장
과	명		본교
과	명		본교

제 3 조 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 4 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
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 6 조 (학사관리-제적기준)

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,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적처리 아니한다.

②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 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④ 대학-산업체간 협약에 의해 경력없이 입학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입학 후 6개월간 의무재직을 해야한다.

제 7 조 (산업체 교수요원 활용 및 시설이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 8 조 (교육비 및 등록)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본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신분)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10 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

대학에 대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명시토록 한다.

제 11 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

대학과 산업체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기타사항)

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학		산업체	
주소	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	**주소**	
기관명	경기과학기술대학교	**기관명**	
대표	총장 **김 덕 현** (직인)	**대표**	(직인)

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

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와 〈회사명〉_____(이하 "산업체"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
②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학과명	위탁생 수	성명	위탁교육장
과	명		본교
과	명		본교

제 3 조 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 4 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
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 6 조 (학사관리-제적기준)

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,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적처리 아니한다.

②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 이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④ 대학-산업체간 협약에 의해 경력없이 입학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입학 후 6개월간 의무재직을 해야한다.

제 7 조 (산업체 교수요원 활용 및 시설이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 8 조 (교육비 및 등록)

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본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신분)

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10 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

대학에 대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명시토록 한다.

제 11 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

대학과 산업체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기타사항)

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학		산업체	
주소	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	**주소**	
기관명	경기과학기술대학교	**기관명**	
대표	총장 **김 덕 현** (직인)	**대표**	(직인)